#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76

발의연월일: 2025. 2. 28.

발 의 자:이연희·이정문·복기왕

박상혁 · 정성호 · 한민수

김남희 • 서미화 • 김동아

이춘석 · 허종식 · 허성무

이병진 · 이광희 · 박홍배

임미애 • 문진석 • 한준호

정준호 • 박용갑 • 윤종군

의원(2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조합장 등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의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보관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장이 해임되는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고의로 서류·관련 자료나 속기록 등을 조합에 인계하지 아니하여 후임 조합장의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인계 의무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장을 포함하여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청산인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

등을 조합에 인계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 규정을 두어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2항등).

법률 제 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1항 중 "대표자를 말한다"를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청산인, 대표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은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이 조 제1항에 따른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38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나 제125조제1항에 따른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조합에 인계하지 아니한 자

제140조제2항제4호 중 "제125조제2항"을 "제125조제3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 계) ① 추진위원장·정비사업 계) ① -----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 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대표자를 말한다. 는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 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 나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 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 나 는 영 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청산 <신 설> 인, 대표자 또는 전문조합관리 인은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 ② (생략)

③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 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와 <u>제2</u> <u>항</u>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인계받 은 시장·군수등은 해당 정비 사업의 관계 서류를 5년간 보 관하여야 한다.

제13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 략) <u><신 설></u>

② (생 략) 제140조(과태료) ① (생 략)

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이 조 제
1항에 따른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조합에 인계하여야
<u>한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u>4</u>
<u>제3항</u> -
<u>.</u>
제138조(벌칙) ①
1. ~ 8. (현행과 같음)
9. 제1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
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2 2 2 2 2 2 2 2
<u>관련 자료나 제125조제1항에</u>
<u> 관련 자료나 제125조제1항에</u> <u> 따른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u>
따른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
따른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 자료를 조합에 인계하지 아니

③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 7 -